

의안
번호

1

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2022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

2022. 08. 29.
전문위원 김동성

1. 제안이유

-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추가경정예산안 규모

□ 세입예산안(총괄)

〈보건소 세입 예산안 규모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%	비 고
계	23,575,944	19,745,992	3,829,952	19.40	
건강정책과	1,451,393	1,371,058	80,335	5.86	
건강관리과	18,564,260	15,446,269	3,117,991	20.19	
의약과	2,814,881	2,413,057	401,824	16.65	
보건위생과	467,248	451,573	15,675	3.47	
보건지소	278,162	64,035	214,127	334.39	

-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2,995만원이 증가한 235억 7,594만원이며, 세입 증가율은 일반회계 19.4%임.

〈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대비 증감률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	비 고
				%	
일반회계 총예산	1,079,961,358	922,755,964	157,205,394	17.04	
보 건 소 예 산	23,575,944	19,745,992	3,829,952	19.40	
※ 비 중 (%)	2.1	2.1	2.43		

- 금번 추경 편성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2.1%, 세입 추가증가율 대비 2.43%에 해당함.

□ 일반회계 자원별 세입현황

〈추가경정 자원별 세입현황〉

(단위 : 천원)

과 목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	비 고
				%	
세 외 수 입	193,737	7,000	186,737	2,667	자체보조금 정산 잔액
조 정 교 부 금 등	304,671	40,048	264,623	660	역학조사 인력지원 선별진료소 인력지원
보 조 금	19,114,551	17,833,100	1,281,451	7.18	국비 : 4억 5,846만원 시비 : 8억 2,298만원
보 전 수 입 등	2,097,141	0	2,097,141	100	국·시비 보조금 미사용 잔액 및 정산 잔액

- 세외수입은 2021회계연도 자체보조금 집행후 정산잔액 1억 8,673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.
- 조정교부금등은 역학조사(1억 3,497만원) 및 선별진료소(1억 2,964만원) 인력 지원 사업비 2억 6,462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음.

- 보조금은 국·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 등을 반영하여 학생주치의 사업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울시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1억 8,854만원이 감액된 반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,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14억 6,999만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7.18%인 12억 8,145만원이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, 보조금은 보건소 세입 추가예산의 33.4% 차지하고 있음.
- 보전수입등은 2021회계연도 국·시비보조금 미사용잔액 12억 3,852만원, 집행후 정산잔액 8억 5,862만원으로, 총 20억 9,714만원이 편성되었음.

□ **세출예산안(총괄)**

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%	비 고
합 계	46,627,049	42,697,736	3,929,313	9.20	
건 강 정 책 과	12,787,396	12,656,446	130,950	1.03	
건 강 관 리 과	26,631,599	23,485,753	3,145,846	13.39	
의 약 과	5,251,364	4,856,344	395,020	8.13	
보 건 위 생 과	745,621	729,496	16,125	2.21	
보 건 지 소	1,211,069	969,697	241,372	24.89	

- 2022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466억 2,704만원으로, 기정예산 대비 9.2%인 39억 2,931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〈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대비 증감률〉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	비 고
				%	
일반회계 총예산	1,079,961,358	922,755,964	157,205,394	16.29	
보 건 소 예 산	46,627,049	42,697,736	3,929,313	9.20	
※ 비 중 (%)	4.31	4.62	2.49		

- 금번 추경 편성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4.31%, 세출추가 증가율 대비 2.49%에 해당함.

□ 부서별 세출예산안

1) 건강정책과

- 기정예산 대비 1억 3,0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 - 보건청사 시설 수선비(5,096만원), 인력운영비(611만원) 2건의 5,707만원이 증액되고,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17건의 국·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,437만원이 편성되었음.
 - 감액사업은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비 1,050만원이 감액되었음.

〈 건강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〉

(단위 : 천 원)

사업명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	비 고
				%	
보건청사 유지 운영	538,334	487,373	50,961	10.4	<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구비 증액>
어린신 헬스케어 프로그램	16,950	27,450	△10,500	△38.2	<코로나19 인한 경로당 폐쇄 등에 따른 감액>
인력운영비	577,726	571,610	6,116	1.06	<공무직 정근수당 신설에 따른 증액>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	84,373	0	84,373	100	국비 : 8건 61,276 시비 : 9건 23,097

1) 건강관리과

- 기정예산 대비 31억 4,5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 - 난임부부 지원(4억 985만원), 어린이예방접종(5,224만원) 등 14건의 6억 7,486만원이 증액되고,
 -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(5억 9,112만원), 역학조사 인력지원(1억 3,497만원) 등 7건의 10억 3,498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,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67건의 국·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5,564만원이 편성되었음.
 - 감액사업은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비용(4,739만원)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울시 지원사업(1억 2,069만원) 등 14개 2억 1,818만원이 감액되었음.

〈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〉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%	비고
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비용	37,008	84,400	△47,392	△56.1	<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>
에이즈환자 진료비	262,110	216,938	45,172	20.8	<국·시비보조금 교부>
생물테러 보호구 장비 구입비	2,942	0	2,942	1000	<국·시비보조금 교부>
어린이예방접종	3,064,717	3,012,477	52,240	1.73	<확정내시에 따른 변경>
유치원, 초등학생 인플루엔자	520,403	537,643	△17,240	△3.20	<확정내시에 따른 감액>
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	1,095,018	503,890	591,128	117	<성립전> <국·시비보조금 교부>
선별진료소 인력지원	129,648	0	129,648	100	<성립전><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인력 보수>
역학조사 인력지원	134,975	0	134,975	100	<성립전><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인력 보수>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울시지원사업	54,898	175,593	△120,695	△68.7	<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>
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	554,981	328,980	226,001	68.6	<국·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>

한방치료비	33,600	46,200	△12,000	△27.2	<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>
난임부부 지원	863,489	453,633	409,856	90.3	<성립전 등> <확정내시에 따른 증액>
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	57,150	28,875	28,275	97.9	<성립전> <시비보조금 교부>
방문간호사 업무용 태블릿 PC	56,000	0	56,000	100	<국·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>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	1,655,143	0	1,655,143	100	국비 : 31건 1,160,864 시비 : 36건 494,279

3) 의약과

- 기정예산 대비 3억 9,5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 -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550만원과 인력운영비 64만원이 증액되고,
 -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(7,516만원),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협치사업(5,847만원) 등 19건의 2억 446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,
 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등 34건의 국·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87만원이 편성되었음.
 - 감액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비 30만원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,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.

〈 의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〉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%	비 고
한방진료비 지원	20,826	0	20,826	100	<성립전> <시비보조금 교부>
건강관리마일리지 상환 및 전산시스템 설치비	19,500	0	19,500	100	<성립전> <시비보조금 교부>
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	110,160	35,000	75,160	214	<성립전> <시비보조금 교부>
재난의료지원 물품구입	2,840	0	2,840	100	<성립전> <국·시비보조금 교부>

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비	17,000	0	17,000	100	<성립전> <시비보조금 교부>
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	26,000	36,000	△10,000	△27.7	<국·시비보조금 변경 내시>
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협치사업	58,470	0	58,470	100	<성립전> <시비보조금 교부>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	204,871	0	204,871	100	국비 : 10건 70,520 시비 : 24건 134,351

4) 보건위생과

- 기정예산 대비 1,6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 - 학부모 식품안전 지키미 등 6건의 국·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,612만원이 편성되었음.
 - 감액사업은 없음.

〈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〉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%	비고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	16,125	0	16,125	100	국비 : 3건 9,029 시비 : 3건 7,096

5) 보건지소

- 기정예산 대비 2억 4,1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 - 인력운영비 5,461만원이 증액되고,
 - 100세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(4,200만원), 장위·석관 세대통합 사업운영 (2,800만원) 등 17건의 1억 45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,
 - 모자보건 건강관리 등 6건의 국·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61만원이 편성되었음.
 - 감액사업은 영유아 모성 건강관리(1,224만원), 만성질환 관리사업(392만원) 등 21건의 4,1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.

〈 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〉

(단위 : 천 원)

세부사업명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비 고	
				%	
100세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	42,000	0	42,000	100	<시비보조금 교부>
모자보건 건강관리	65,400	30,900	34,500	111	<성립전 예산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구비 750만원 감액>
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프로그램	6,500	0	6,500	100	<성립전> <시비보조금 교부>
가족이 함께하는 영양프로그램	10,500	0	10,500	100	<성립전> <시비보조금 교부>
만성질환 관리사업	21,320	25,240	△3,920	△15.5	<구비>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 등
영유아 모성 건강관리	24,400	36,640	△12,240	△33.4	<구비>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 등
장위·석관 세대통합 사업운영	28,000	0	28,000	100	<성립전><시비보조금 교부>
인력운영비	627,358	572,742	54,616	9.53	<구비>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수당 증액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	104,616	0	104,616	100	국비 : 2건 14,132 시비 : 4건 90,484

3. 검토결과

-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'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'을 검토한 결과, 추가경정 예산은 국·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·감분과 코로나19 대응사업비, 격리입원치료비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,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운영축소 등에 따른 감액분,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,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됨.